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

제1장 회 장

제1조 (소집권자)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소집하며 부회장도 유고가 되면 서기가 소집한다.

제2조 (의장과 대리)

의장은 회장이 한다.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하며 부회장도 유고 시에는 참석한 최후 증경회장의 순으로, 증경회장들도 없으면 회에서 선임직자 순위의 사회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사회하게 한다.

제3조 (직무 및 회장의 동의)

회장은 사회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다. 회장이 동의하려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원이 사회하도록 하고 회원석에서 하여야 한다. 그 안건이 결정될 때까지는 사회하지 못한다.

제4조 (회장의 제척)

회장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토의와 표결에 사회하지 못한다.

제5조 (규칙 해석권)

회원 중 회의 규칙에 대하여 질문하면 회장이 먼저 설명하거나 타인으로 설명케 하고 공포하면 그것이 법이 되나 회원 2인 이상이 불복하여 항변하면 회장은 회중에 가부를 물어 결정한다.

제6조 (위원 임명권)

회에서 부회장을 위시한 각 위원을 선거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회장이 임명한다.

제2장 회 의

제7조 (개회)

정한 시간이 되면 회장은 개회 기도회를 인도함으로 개회한다.

제8조 (회원 점명)

서기는 회원을 호명하여 참석 수와 결석 수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개회 성수)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성수는 전 회원의 과반수이며 성원이 되었으면 회장은 개회를 선언한다.

제10조 (유회)

성수가 되지 못하였으면 30분을 더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회장은 회중에 몰어 더 기다리든지 다음 회의의 일사와 장소를 결정하고 유회한다.

제11조 (결의 성수)

성수가 되어 개회하였을지라도 회의 도중에 성수가 되지 못하면 회의를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잠시 동안은 토의할 수 있고 표결 시에는 반드시 성수가 되어야 하며 정회, 폐회 동의는 예외이다.

제12조 (위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위임하였으면 개회 성수에는 들어가며 표결 시 총 투표수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직책상 당연직으로 회원이 되었을 경우 그 직책에 관계가 있는 자를 대리로 보냈을 경우는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13조 (안건심의)

제안된 안건은 3독회로 심의한다.

1. 제1독회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질문과 대체 토론이 있을 후 제2독회로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를 결정한다.

2. 제2독회

축조 심의한다. 이때에 수정안이 나오면 원조항과 대조하여 심의하고 다수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3. 제3독회

제2독회에서 수정한 것을 가지고 그 제안 전체를 통과시키느냐 않느냐를 결정한다. 제2독회에서는 수정할 수 있어도 제3독회에서는 못하고 다만 잘못된 글자나 서로 모순되고 저촉되는 것을 고칠 수 있다. 제3독회에서 가부 결정은 정한 규정에 의한다. 회칙안이나 예산안 중에도 간단한 것은 독회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 의안처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회록 작성 및 채택)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한다.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자수 또는 출석자 성명(소규모 회의), 회의보고, 결의사항(반대자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동의자, 재청자의 성명과 가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을 적고 회의가 채택한 후 회장과 서기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회록 접수)

회가 개회 또는 속회하면 서기는 전 회의록을 낭독하고 착오가 있으면 정정하여 회는 접수한다.

제16조 (회기 불계속)

회기 불계속의 원칙으로 다음 회기에 계속하자는 결의가 없으면 한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폐기된다.

제3장 동 의

제17조 (발의)

동의를 정회원만이 할 수 있다. 단, 본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18조 (성안)

의견 제시나 토론을 마무리하고 정리된 문장으로 안을 만드는 것을 성안이라 한다.

제19조 (동의 성립)

동의를 재청을 얻어야 의안으로 성립한다.

제20조 (언권)

동의를 한 회원이 토론에 먼저 언권을 갖는다.

제21조 (동의의 종류)

동의에는 원동의, 보조동의, 임시동의, 특수동의, 번안동의가 있다.

제22조 (원동의 성립)

원동이는 의사의 중심이 되는 제안으로써 원동이가 성립되기 전에는 다른 동의를 할 수 없다.

제23조 (일사부재의)

번안하기로 하는 동의가 아니면 같은 회기의 결의에 위배되는 동의는 할 수 없다.

제24조 (보조동의)

보조동이는 원동이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동이의 처리에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써 원동의보다 먼저 표결한다.

1. 수정동의

개 의와 재개의다. 원동이의 골자는 두고 조건을 고치는 것이다. 동의에 반대되는 개 의는 할 수 없으며 재개의 이상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안(代案)이 있다. 원동이의 골자를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2. 위원회 회부동이는 토론 없이, 유기한 연가동이는 토론한 후에 다수결로 결정하며 기한이 되면 다시 상정한다.

3. 보류동이는 유기한 보류동 의와 무기한 보류동 의가 있다. 유기한 보류동 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서기가 회장에게 보고하여 재론하며 무기한 보류동 의는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론한다.

4. 아래의 동의들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1) 토론시간 제한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 2) 토론시간 연장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 3) 토론 종결동의 : 재청 있고 개의와 토론은 없다.
 - 4) 질문시간 제한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 5) 질문시간 연장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 6) 질문 종결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제25조 (동의처리)

임시동의는 부수(附屬) 동의로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원동의에 부수되는 동의거나 호소와 요구 등이 있다. 임시동의는 원동의, 보조동의보다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1. 동의의 철회는 재청이 있기 전에는 동의자의 철회 요구로 철회되지만 재청이 있으면 재청자의 승인을 얻고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개의, 재개의가 있을 때에는 개의나 재개의가 철회되거나 부결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는 다수결로 한다.
2. 규칙 일시정지 동의는 재청이 있어야 하고 토론 없이 표결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재표결의 요구는 표결의 결과 발표가 의심스러울 때 회원이 재표결을 요구하면 재청, 토론, 표결 없이 즉시 회장은 재표결 요청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를 입회시켜 재표결을 지시하여야 한다.
4. 회원들이 광고나 서류공개, 회장의 사회와 결정에 대한 요구와 호소는 재청, 토론, 개의 없이 가부를 물어 다수로 결정한다. 회장에 대한 호소는 회장 자신이 가부를 묻지 못하고 부회장이나 서기가 묻는다.
5. 모든 청원서는 개회 전에 접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회의 진행 중 청원서가 서기에게 접수되면 회장은 회에 물어 접수하든지 반려하든지 하여야 한다. 토론은 있으나 개의는 없고 다수로 결정한다.
6. 심의 분할 동의는 원동의안에 두 사건 이상이 포함되어 있을 때 회원 2인 이상이 요구하면 다수로 결정하여 나누어서 가부를 묻는다.

제26조 (특수동의)

특수동의를 우선(優先)동의라고 하는데 회의 진행이나 회원의 권한에 동의이다. 이 동의는 가장 우선권이 있으므로 다른 회원의 발언 중이거나 다른 동의의 심의 중이라도 낼 수 있으며 토론없이 바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규칙상 질문

회장이나 회원이 회의법을 어길 때 “규칙이요”하여 회의의 진행을 바로 잡는 것이다. “규칙이요”하고 언권을 청하면 회장은 언권을 즉시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규칙에 관한 발언이 아니면 바로 중지시켜야 한다.

2. 긴급동의

회의순서 변경 등 회의 진행에 관련하여 시급히 결의하자고 하는 동의이다. 재청이 있어야 하고 토론 없이 표결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 정회, 폐회동의

재청이 있어야 하나 토론 없이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래의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우선권이 있다.

- 1) 규칙상 질문이 있을 때
- 2) 회원이 발언 중일 때
- 3) 표결, 투표 중일 때
- 4) 속회 직후

제27조 (반안동의)

반안 동의는 가결된 것이나 부결된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절대 다수자의 회원이 인정할 때 폐회전까지 재론하자는 동의이다. 재론하고자 하면 결정할 때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하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론할 수 있다.

제28조 (표결순위)

가부를 표결할 때 동의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수동의
2. 임시동의

3. 보조동의

4. 원동의

5. 변안동의

(무기한 연기동의, 보류동의, 유기한 연기동의, 위원회 회부동의, 재개의, 개의, 원동의 순이다).

제4장 발 언

제29조 (언권과 예의)

회원은 회장을 불러서 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하며, 회장에 대해서는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다른 회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제30조 (발언시간 제한)

회원의 발언은 시간을 제한할 수 없으나 회의 진행상 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회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회의가 결의하면 회원의 발언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 (발언순위)

회원 2인 이상이 일시에 기립하여 회장을 부르는 경우 회장석에서 더 먼 자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제32조 (토론순위)

토론의 순위는 제안자, 반대자, 찬성자를 번갈아 발언케 한다.

제33조 (발언회수 제한)

한 제안에 한 회원은 한번 발언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장이 허락하면 두 번까지 할 수 있다.

제34조 (회원의 품위)

회원 중에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회원이나 “규칙이요”하고 발언하고 회장은 규칙을 준수하라고 주의시켜야 한다.

제35조 (비공개 회의)

회에서 되어지는 일이 비회원들에게 알려져서 유익되지 못한 경우에는 토론 없이 다수 결의하여 방청을 불허하고 진행한다.

제5장 표 결

제36조 (표결의 의미)

표결은 회원의 찬성과 반대, 선거에서는 당선과 낙선, 심의에서는 가결과 부결을 결정한다.

제37조 (표결의 방법)

표결은 안건마다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두표결

회장이 가부로 표결할 때는 가하면 “예”하고 부하면 “아니오”를 물어서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아니오”가 있으면 거수로 표결해야 한다. 단, 이의가 없을 때는 허락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거수표결

회원들이 앉아서 가와 부 또는 찬성과 반대에 각각 손을 들어 가와 부에 표결한다.

3. 투 표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를 표시한다.

제38조 (표결방법 결정)

표결의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회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회원 중 표결의 방법을 제안하면 회중에 물어 결정한다. 단, 인사 문제는 한 회원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하여야 하며 규칙, 규정의 개정은 회원 10분의 1 이상이 원하면 투표하여야 한다.

제39조 (기권 처리)

1. 일반 안건의 가부에 대한 구두 표결과 거수 표결 시 기권한 자가 있으면 다수에 속한다.
2. 법과 규칙과 규정의 개정시, 거수표결의 기권은 총표결수에는 계산되나 가부 표결수에서는 제외한다.

제40조 (투표 불참 및 무효표 처리)

투표 시 참석하였을지라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총투표수에서 제외한다. 무효표는

1. 일반 안건의 결정에는 다수에 속한다.
2. 법과 규칙과 규정의 개정 시, 무효표는 부표에 속한다.
3. 인준 시에는 총투표수에 계산하며 다수에 속한다.
4. 선임 시는 총투표수에 계산하며 반대에 속한다.

제41조 (표결 시 발언과 이석)

표결 시에는 일체 발언을 중지하며 회원들은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제42조 (표결 시 회장의 권한)

거수 표결 시 회장은 거수하지 않으며 가부가 동수이면 회장이 결정하고 투표 시에는 회장도 투표하며 가부가 동수면 부결로 한다.

제43조 (투표수와 회원수)

투표 전에 회원수를 점검한 후 투표하고 개표위원은 투표용지를 세어서 회원수보다 모자라면 무방하나 많으면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확인하고 무효로 선언한다.
단, 확인된 표수가 결정에 영향이 없으면 다수표에서 제하기만 한다.

제44조 (개표)

개표위원은 한 사람은 부르고, 한 사람은 지켜서 보고, 한 사람은 기록한다. 회원들이 공개하기를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

제45조 (표결 선포)

개표위원은 득표 계산한 것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총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찬성수, 반대수, 무효투표수, 당선, 가결, 부결을 선포한다.

제46조 (단일 후보투표)

후보자가 1인일 시 일차 투표에서 선임되지 못하면 후보를 무효로 하고 본회에서 선임한다.

제47조 (구두 호천)

구두 호천에는 재청이 필요 없고 천거 들어온 순서대로 찬성, 반대를 표결한다. 구두 호천의 마감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48조 (동수 투표의 처리)

선임 시 동수의 표를 얻으면 임직 순위가 빠른 자로 정한다.

제49조 (표결 순위)

원동의, 개의, 재개의를 표결할 때 재개의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묻고 가결되면 개의와 동의를 묻지 않고 가결을 선포한다. 재개의가 부결되면 개의, 원동의의 순으로 가부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편한 안건은 동시에 물어 결정할 수도 있다.

제50조 (법제정의 정족수)

법, 규칙, 규정을 처음 제정할 때는 가부를 다수로 결정한다.

제6장 개정 절차

제51조 (개정)

이 규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에 미비된 것은 각 치리회가 다수로 결의하여 시행한다.

1988년 4월 제72회 총회 제정
1989년 9월 제74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